

October 21, 2015

회생절차 개시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할까?

1. 사실 관계

Y건설사는 A주택보증회사로부터 Y가 준공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을 받았고, X회사는 Y가 장차 A 주택보증회사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 후 Y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A주택보증회사는 하자보수보증 약정에 따라 Y가 시공한 아파트 중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보증을 변제해 왔고, X는 A주택보증회사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해 왔다. X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해 Y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데, X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2.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18조 각 호),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면 상당한 정도로 금액 되거나 면책이 되는 등 회생채권 해당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건축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목적물이 완공된 후 수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회생절차개시 후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회생채권에 해당하느냐가 자주 문제돼 왔다. X는 아파트의 하자가 Y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이상, 자신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해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

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됐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춰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인이 모두 Y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으므로, X의 Y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위 판결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나아가 건설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당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 장래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 이 때 회생채권 신고누락으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윤 변호사

TEL. 02 316 4205

E-Mail. jyyun@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